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26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윤준병・이기헌・정동영

황명선 • 박희승 • 이춘석

안호영 • 박민규 • 조계원

허종식 • 민형배 • 서영교

문대림 · 김윤덕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한 조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누적등록률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자동차 대비 9.2%에 불과한 수준이고, 수소자동차의 2023년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54.64% 감소한 4,635대에 그침. 이런 상황에서 관련세제 혜택이 일몰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이 지연되고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지속적으 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 |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 | | |
| 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 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 |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
|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 | 3 | | |
| 터 <u>2024년</u> 12월 31일까지 제조 | <u>2029년</u> | | |
| 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 | | |
| 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 | |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
|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 | 6 | | |
| 터 <u>2024년</u> 12월 31일까지 제조 | <u>2029년</u> | | |
| 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 | | |
| 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 | | |
| ⑦・⑧ (생 략) | ⑦·⑧ (현행과 같음) | | |
|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 | 9 | | |
| 터 <u>2024년</u> 12월 31일까지 제조 | <u>2029년</u> | | |
| 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 | | |
| 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 | | |